

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1. 16.(월) 17:3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① 성원보고
 - ② 국민의례
 - ③ 개회선언
 -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5 의결사항

가. KBS2-TV 송출중단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(2012-02-002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정당한 사유 없이 KBS2-TV의 송출을 중단하여 방송법령을 위반한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하기로 의결함

<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내용 >

- **(시정명령)** 정당한 사유없이 KBS2-TV 방송채널 송출을 중단한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15조제1항, 제18조제1항제6호, 제77조, 제85조의2제2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라 ①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BS2-TV송출을 금일 20시까지 재개하여야 하며 ②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③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KBS2-TV 송출재개시까지 매일 협상 진행경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④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상파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**(과징금)**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KBS2-TV 채널 송출을 중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제7호,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다.
- **(과태료)**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KBS2-TV 채널 송출을 중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77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한다.

※ 효력발생시기

- 시정명령 의결 즉시 발효, 과징금과 과태료는 '12.1.17일 20시부터 효력 발생
- 동법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'12.1.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발효
- 동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동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형사고발은 '12.1.18일 20시부터 발효

6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 개최일시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함

6. 폐 회 (18:05)